

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

제 1 조 (목적)

이 지침은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.) 제58조에 근거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, 그 외 관련 법규(이하 "관련법규"라 한다.)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.

제 3 조 (용어의 정의)

이 지침에서 "수수료"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① 보수 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1. 집합투자업자 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(집합투자업자 보수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당사자간 정하는 매입보수, 매각보수, 특별용역보수 등을 포함한다.)
 2. 판매 보수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 3. 신탁업자 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 4.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 5. 성과 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보수
- ② 수수료
 1. 판매수수료 :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수수료를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
 2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시 일정한 범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.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됨

제 4 조 (수수료 부과기준)

-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,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
제 5 조 (수수료 부과절차)

- ①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준 및 지급주기 등은 계약의 내용, 특성, 규모,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- 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집합투자계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
제 6 조 (설명 의무)

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수수료의 고지)

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수수료의 인상)

회사는 이 지침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집합투자계약 등을 변경하여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계약 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9 조 (공시)

- ①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지침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부터 시행한다.